행정처분의 기준(제3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에 따르며,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,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(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		
	2.140	1차	2차	3차	4차		
가.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	법 제35조						
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	제1항						
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	제1호						
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							

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					
1)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개월	취소
2)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)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	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. –	취소
경우 가)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(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2개월	취소	
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만 해당한다)		기 시 코 크	기시코크	기 시 코 키	⇒ 1 >
나) 가) 외의 관광사업		사업성시 1개월	사업정지 2개월	사업성시 3개월	취소
나.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	제1항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)
다.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 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2호				3/川 担/
1) 카지노업 가)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 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취소	
하고 변경한 경우 나)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변경한 경우	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취소
2) 유원시설업 가)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	사업정지 5일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취소
나)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
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				
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				
다)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영업소
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			5일	10일	폐쇄명령
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					
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				
	법 제35조	시정명령	사업정지	취소	
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제1항		15일		
	제2호의2	-1 > (> 1			
마.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	법 제7조 제2항	취소(신			
해당하게 된 경우	세 스 엉	고업종의 경우에는			
		영업소			
		폐쇄명령)			
바. 법 제8조제4항(같은 조 제5	법 제35조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
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	제1항		1개월	2개월	고업종의
함한다)에 따른 기한 내에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제3호		또는 사업계획		경우에는 사업정지
고를 이자 역약한 경기			승인취소		3개월)
사.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	법 제35조	시정명령	취소(신	신고업종	ا ا
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	제1항		고업종의	의 경우	
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	제3호의2		경우에는	에는	
우			시정명령)	영업소	
아.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	법 제35조	시정명령	사업정지	폐쇄명령 사업정지	취소(신
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	제1항	·	1개월	2개월	고업종의
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	제4호				경우에는
한 경우					사업정지
자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	법 제35조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3개월) 취소(신
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	제1항	1000	1개월	- 1 B B F B F B F B F B F B F B F B F B F	고업종의
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	제4호의2		- 1 E		고 B 6 기 경우에는
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	., 12				사업정지
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					3개월)
우					
차.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	법 제35조				
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	제1항				

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	제5호				
1) 카지노업		사업정지 3개월	취소		
2)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	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사업정지 5개월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)
카.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6호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	취소
타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 제1호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
파. 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1)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 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7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5일	사업정지 10일	취소
2)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행계획서(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)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아니한 경우	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취소
3)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 여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(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)을 변경한 경우	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취소
하.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 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 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 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	법 제35조 제1항 제8호	시정명령	사업계획 승인취소		

임의로 변경한 경우					
거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	법 제35조				
항을 위반한 경우	제1항				
1)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	제8호의2	취소			
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				
2)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	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		1개월	2개월	3개월	·
사항을 위반한 경우		,		., _	
너.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	법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	제35조제1		10일	20일	
아니한 경우	항제8호의3				
더. 법 제20조제1항, 제4항 및	법 제35조				
제5항을 위반한 경우	제1항				
1)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	제9호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			1개월	3개월	
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			또는		
모집을 한 경우			사업계획		
			승인취소		
2)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	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			1개월	3개월	
및 절차를 위반하여 분양 또			또는		
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			사업계획		
이 비 레이크레트립션 법은 그		기기대대	승인취소	기시기기기	기시기기기
3)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		시정명령			사업정지
유자 ·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			1개월	2개월	3개월
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			또는		
니한 경우			사업계획		
러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	법 제35조	시정명령	승인취소 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사항을 위반한 경우	제1항	1000	15일	' - 0 ' 1개월	11-11
100 1100 01	제9호의2		102	1/11/2	
머.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	, ,	시정명령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
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		1000	1개월	3개월	11-
하게 된 경우	제10호		1/11년	0/112	
버.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	•	취소			
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	제2항				
<u>•</u>					
서.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	법 제35조	사업정지	사업정지	취소	
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	제1항	1개월	3개월		
유지 ·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	•				
어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	법 제35조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	사업정지

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	제2호 법 제35조 H 제1항				
경우	시11 등 제12호				
76구 1)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		사업정지			
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		3개월	취소		
경우			-> .		
2)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		사업정지	취소		
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니	-	3개월			
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					
설을 사용하는 경우				>	
3)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어	I		사업정지	취소	
서 영업을 하는 경우		1개월	3개월		
4)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					
(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어					
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	<u> </u>				
다)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			>		
가)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		사업정지	취소		
나) 크치크 이키지키 커스		3개월	기선거기	기어거기	기어거기
나)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		시정명령	. ,		
다 기다리 기체체이 이메리도		기가마라라	10일	1개월	3개월
5)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		시성병당	사업정지		
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			10일	1개월	3개월
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					
하는 경우		VI (VI =1) =1	VI VI -1 -1	-1.	
6)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			사업정지	취소	
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		1개월	3개월		
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병	}-				
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]				
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히	-				
는 경우					
7)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		사업정지	취소		
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]	3개월			
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김	 				
소시키는 경우					
8) 카지노영업소에 19세 ㅁ		시정명령	사업정지	' ' - '	' ' ' - '
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		기억과카	10일	1개월	3개월
9)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			사업정지	취소	
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	5	1개월	3개월		

10)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처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	, , ,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
1)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)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)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4)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5)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	711011	10일	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	1개월 사업정지 3개월	
	법 제35조 제1항 제14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)
터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15호				
1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 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 한 경우		사업정지 20일	사업정지 1개월	취소	
2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 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	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3개월
3)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 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	버 레이트코	사업정지 5일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취소
퍼.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16호				
1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 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	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사업정지 1개월

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)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 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 설·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 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 용한 경우 허.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	법 제35조 제1항	사업정지 15일 시정명령	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2개월 취소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)
종사하게 한 경우 고.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를 방해한 경우	제1항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1개월	사업정지 2개월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)
노.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 을 주고받은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19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	20일	취소(신 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)
도.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(여행업자만 해당한다)	법 제35조 제1항 제20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0일	사업정지 20일	취소